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1442 호
- 다. 제출일자 : 2023. 10. 16.
- 라. 회부일자 : 2023. 10. 23.

2.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도로 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23년도 지출계획 상 예치금액이 당초 대비 20% 초과(50%)하여
- 나. 당초 예치금 18,801백만원을 28,171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 다. 2023년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백만원)

< 지 출 부 문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B)	2차 변경 (C)	증 감 (D=C-A)	증감률 (D/A*100)
계	18,801	19,271	28,171	9,370	50%
예치금	18,801	19,271 (+470)	28,171 (+8,900)	9,370	50%

※ 최종 의회 의결액(당초, 제315회 정례회)대비 재무활동(예치금) 20% 초과(50%)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제11조제2항1)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지출금액을 당초 188억 1백만원에서 93억 7천만원(50%)이 증액된 281억 71백만원으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건임.

[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변경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	1차변경 (’23.9월)	→	2차변경 (’23.5월)
계	52,752		59,622		69,904
도로시설물 관리	33,951	6,400 (19%)	40,351	-	40,351
도로굴착복구공사	33,736	6,400	40,136	-	40,136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200	-	200	-	200
일반운영비	15	-	15	-	15
예치금	18,801	470 (2.5%)	19,271	8,900	28,171
				→ 9,370 (50%)*	

*정책사업비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1)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현황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법」 제91조2)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3)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이자 부담한 비용과 기금예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5조4)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표〕 참조),

-
- 2)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⑤ ~ ⑥ (생략)
- 3)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 ② ~ ⑤ (생략)
- 4)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연평균 약 36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330억원 정도의 지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차는 예치금으로 처리하여 차년도 예치금 수입에 반영하고 있음.

[표] 최근 5년간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결산)
수 입 액		32,058	40,486	33,119	33,455	41,729
원인자부담금		31,672	39,945	32,780	33,032	41,109
이자수입 등		386	541	339	423	620
지 출 액		31,018	36,905	31,453	35,219	32,109
도로굴착복구공사	소 계	30,873	36,673	30,580	33,396	31,195
	직접복구비	25,130	32,333	27,332	29,197	26,204
	사후정비비	4,382	2,834	1,731	2,761	3,500
	감리비및부대비	1,357	1,506	1,517	1,438	1,491
	기타(잔산운용 등)	145	232	873	1,823	914
증 감		증 1,040	증 3,581	증 1,667	감 1,764	증 8,900
년도말 잔액		14,491	18,072	19,738	17,974	26,212

- 일반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지출계획은 최근 3년 동안의 수입/지출규모 및 추세를 감안하여 전년도에 수립하고, 당해연도 상반기(1월)와 하반기(7월)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신청받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사물량에 대한 지출계획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고 있음.
- 이때 법 제11조제2항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⁶⁾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 지출 중 '예치금'의 지출계획 즉, '24년으로 이월되는 기금 예상액을 당초 188억 1백만원 대비 93억 7천만원(50%)이 증가한 281억 71백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8억 7천만원이 발생하여 직접복구비에 64억원을 추가지출(19%)하고 남은 4억 7천만원(2.5%)은 예치금으로 반영(1차변경)하는 한편,

-
- 5)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6)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 (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0'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참조

[표] 2023년도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세부내용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 초	변경 (1차)	변경 (2차)	증 감		당 초	변경 (1차)	변경 (2차)	증 감	
합 계	52,752	59,622	68,522	증)15,770	합 계	52,752	59,622	68,522	증)15,770	
원인자 부담금	35,000	41,870	41,870	증)6,870	계	33,736	40,136	40,136	증)6,400	
이수 자입	440	440	440	-	도로 굴착복 공사	직접 복구비	28,500	34,900	34,900	증)6,400
						사후 정비비	3,500	3,500	3,500	-
						감리비	1,700	1,700	1,700	-
						시 설 부대비	36	36	36	-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운영	공공운영비	200	200	200	-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15	15	15	-
예치금 회수	17,312	17,312	26,212	증)8,900	예치금	18,801	19,271	28,171	증)9,370	

- '22년도 도로굴착복구 기금 결산('23.5월) 결과([표] 참고) 원인자부담금 실제 수납액과 도로굴착복구공사 지출 간에 발생한 추가 잉여금 89억원을 '23년도 예치금 수입('22년도 이월액)과 예치금 지출('23년도 이월액)에 반영하려는 것(2차변경)으로,

[표]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	기본경비	예치금
2022 계획	53,414	35,021	670	15	17,312
2022 결산	59,703	32,109	908	6	26,212 (+8,900)

- 이에 재무활동(예치금) 항목 지출금액이 당초 대비 50%가 증액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임.

- 여기서, 예치금은 복구공사 등에 직접 투입하는 재원이 아니라 향후 기금운용계획변경심의를 통해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등에 투입될 예비재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변경안은 법정절차 이행을 통한 단순 회계상의 정리를 하려는 것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변경안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시간순서를 살펴보면, 2차변경인 예치금 89억원 증액은 지난 5월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에서 ‘2023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건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의회 의결을 받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완료해야 했음에도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은 미결상태로 남겨둔 상황에서
- 지난 9월 제3회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본 변경안의 1차변경(직접복구비 64억원, 예치금 4억 7천만원 증액)에 해당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통과시켰으며 이 경우는 정책사업당 변경액이 당초 지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의회 의결 절차가 필요 없는 바, 후순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차수를 1차로 명명함.
- 즉, 시는 9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5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9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1차변경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 기금의 지출금액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기금변경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

을 운용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임을 고려할 때 지난 5월에 20%를 초과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점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겠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됨.